

<277페이지>

(4) ① (밑에서 7번째 줄) → 수정

(4)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

-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. 다만,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

<280페이지>

(3) ④ (밑에서 4번째 줄) → 수정

(3) 면세제외대상

- ① 자동차(상기 (2). ②의 ㉔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  
② 선박  
③ 항공기  
④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·진주·별갑·산호·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

<297페이지>

3. (1)(2) (밑에서 9번째 줄) → 수정

3. 감면율

(1) 상기 2.의 ①, ②의 물품

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

(2) 상기 2.의 ③의 물품

①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경우 : 100분의 30(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)

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)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: 100분의 50

<550페이지>

5. (1) ① (위에서 3번째 줄) → 수정

① 특별통관 대상

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탁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